

## 12.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 (2020.4.21. 개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 (조직 및 구성)

- ① 학생지원처 소속으로 한다. (2019.2.8.개정)
-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법 교육과 지도에 관한 사항
2. 학습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
3. 학습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
4. 교수·학습 관련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
5. 타 대학 교수학습센터와 협력에 관한 사항
6. 교수연구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
8. 이러닝(교과·비교과 온라인 강좌 등 학습관리시스템 LMS)운영에 관한 사항(2017.02.03개정)
7.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

#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4조 (설치)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제5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교무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2019.2.8.개정)

- ② <삭제> (2019.2.8.개정)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학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규」에 따른다. (2019.4.24.호 추가)

제6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연간사업계획과 실적평가
-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④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 (소집 및 의결)

- ① 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